

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778호
2. 발 의 자 : 임춘대 의원 등 25명
3. 발의일자 : 2025년 05월 26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05월 29일

II. 제안이유

-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규정한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, 서울시는 도시형·소규모 농업 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고령 농업인·근로자 등의 사고·질병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.
- 특히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기계 전복·추락·온열질환 등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성 진단·개선, 보험료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합적 예방·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 차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행·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다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.

Ⅳ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조례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용어 정의, 시장의 책무, 예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농업인이 농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줄이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됨.

2. 조례안의 입법 배경

- 국제노동기구(ILO)는 농업을 광업·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 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약 등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도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.
-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농업 분야 산업재해율은 0.76%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(0.65%) 보다 약 1.2배 높은 수준임.
- 국내 농업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농기계 및 농약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안전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.
-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서울시의 농가는 전국 농가(973,707가구)의 약 0.52%에 해당하는 5,084가구이며 농가인구는 전국 농가인구(2,003,520명)의 약 0.61%에 해당하는 12,298명으로 나타남.
- 서울시 농가인구 성별 구성은 남성 6,526명(53.1%), 여성 5,772명(46.9%)으로

남성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< 2024년 서울특별시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>

지역	농가(가구)	농가인구 (명)		
		합계	남	여
전국	973,707	2,003,520	978,935	1,024,585
서울특별시	5,084	12,298	6,526	5,772

- 특히 서울시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,366명으로 서울시 전체 농가인구의 68.03%를 차지하여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< 2024년 서울특별시 60세 이상 농가인구 현황 >

연령비율	농가인구(명)	60세이상 농가인구(명)	60세이상 비율(%)
서울특별시	12,298	8,366	68.03

- 이처럼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재해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.
-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부상, 질병,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생업 종사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5년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농어업인안전보험법’)을 제정(2015.1.6.)하였음.
- 이후 2022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·기술개발 및 보급·지도, 기술 등의 교육·홍보, 전문인력 양성 사업,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이 신설됨¹⁾.

- 한편 서울시는 농업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▶농업기계 안전교육, ▶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, ▶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, ▶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< 농업작업 재해예방 관련 최근 3년 사업 현황(농업기술센터)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
계	(×26,500) 53,000	(×29,500) 59,000	(×59,500) 119,000
농업기계 안전교육	(×1,500) 3,000	(×1,500) 3,000	(×3,000) 6,000
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	(×25,000) 50,000	(×25,000) 50,000	(×25,000) 50,000
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	-	(×3,000) 6,000	(×3,000) 6,000
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	-	-	(×28,500) 57,000

- 농업인이 농업노동 중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동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·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
1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의3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·기술개발 및 보급·지도
2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
3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4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5.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3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(가) 목적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이는 농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취지임.

(나)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농업인’, ‘농업법인’, ‘농업작업’, ‘농업근로자’, ‘농업작업안전재해’, ‘농업인안전보험’에 대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과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
조 항	용 어	정 의
제2조제1호	농업인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
제2조제2호	농업법인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
제2조제3호	농업작업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
제2조제4호	농업근로자	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
제2조제5호	농업작업안전재해	농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
제2조제6호	농업인안전보험	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,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

		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
제2조제7호	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	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자

- 이러한 정의 규정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바탕으로 하며 조례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.

(다)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농업작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.
- 이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임.

(라)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농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면서 ▶목표 및 추진방향, ▶세부추진계획, ▶교육·홍보, ▶보급·지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.
- 이는 농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한 구체적·전략적인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.

- 다만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함께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(마)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농업작업재해 예방 관련 ▶기술보급·지도, ▶교육·홍보, ▶농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, ▶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, ▶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「농어업인안전보험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서울 소재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보험료는 정부 50%, 서울시 10%, 자부담 40%의 비율로 설계되어 지원됨.
- 이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고려한 기술보급 및 농업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음.

4. 종합의견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

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.

- 다만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농업 생산 기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,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보급, 교육·홍보, 위험환경 개선, 지원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담당조사관	연락처
강민수	02-2180-8062
김혜진	02-2180-8057